

#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〉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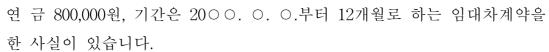
#### 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

#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○○○m² 지상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, 20○○. ○. ○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8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○○○m²(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함)의 소유자입니다.
- 2. 원고는 2000. 0. 0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없이 임차료는





- 3. 위 임대차계약은 20〇〇. 〇. 〇.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,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 대 ○○○㎡ 지상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 받고, 피고가 위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20○ ○. ○. ○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8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2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4호증 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# 공작물의 표시

 석 탑
 대형
 5개

 석조조형물
 대형
 3개

 철근조형물
 소형
 7개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 www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 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), 공작물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